

●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6-132호

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‘행정절차법’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03월 09일

중소벤처기업부장관

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벤처기업 성과를 체계적으로 조명하고 국민 인식을 제고하는 한편, 투자·판로 등 성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매년 일정 기간을 벤처기업 주간으로 지정하고 관련 행사 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벤처기업 주간 지정

- 1) 매년 12월 첫째 주를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」 제16조의 21에 따른 벤처기업 주간으로 지정함
- 2) 벤처기업 성과 확산, 국민 인식 제고 등 행사 운영 근거 마련

나. 벤처기업 주간 행사의 위탁 및 비용 지원 근거 마련

- 1) 벤처기업 주간 행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담기관 또는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
- 2)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

3.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(<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>)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,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(반대 시 이유 명시)

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그 밖의 참고 사항 등

※ 제출의견 보내실 곳

- 일반우편 : 20121 세종시 가름로 180(어진동)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중소벤처기업부 벤처정책과
- 전자우편 : cookie27@korea.kr
- 팩스 : 044-204-7709

4. 그 밖의 사항

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벤처정책과(전화 (044) 204 - 7704, 팩스 044-204-7709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